

## 대한공증인협회 주요 회무

### 공증업무 질의·회신

#### 1 공정증서 등본 교부 문제(송달 관련)

##### □ 질의내용

1. 민사집행법 제50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인락이 있는 공정증서로 작성된 문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고,
2.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에게 판결이 이미 송달되거나 또는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공증인법 제56조의4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공정증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공증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증서는 원본, 정본, 등본 3통을 작성하

여, 원본은 공증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정본은 채권자에게, 등본은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나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실무적으로는 등본을 1통만 작성하여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무자들”로 하여 1통을 교부하고 있고,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만 등본 1통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 명의 채무자들 중 등본을 교부받지 못한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공증인법 제56조의4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본의 교부가 없으므로 송달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지 않아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강제집행의 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바,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나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등본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지요?

## □ 회신내용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의하여 집행권원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른바 집행증서의 정본에 기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개시하기 위하여도 판결의 경우처럼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그 등본의 송달이 필요한바, 본 건 질의 요지는 일반적으로 증서 원본을 작성하면서 정본 1통 및 등본 1통도 함께 작성하여 정본은 채권자 측에, 등본은 채무자 측에 교부하고 있는 공정증서작성 실무와 공증인법 제56조의4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집행권원인 증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종합할 때,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집행증서에서 등본을 송달받은 채무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채무자마다 실제로 따로 따로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는지입니다.
- 이에 대하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 지위까지 겸하는 경우나 한 사람이 쌍방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과 같이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

석하여 촉탁한 경우 수인의 채무자에게 한 통의 등본만 교부하는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흔히 변호사가 여러 사람을 대리하는 경우에 판결정본이나 등본을 한 통만 송달하는 경우에 보듯이, 한 통의 교부만으로도 여러 사람에 대한 교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후자의 경우에도 공증사무소에 출석한 여러 채무자에게 1통의 등본을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증인법상 등본 교부시에는 1통마다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여러 사람이 등본 한 통만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 실무상 집행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무자에 대한 등본교부여부가 문제되지 않도록 하려면 수인의 채무자가 공증인사무소에 출석하여 직접 촉탁하는 경우 공증촉탁서의 수령자확인란에 채무자들이 전부 서명날인하게 하고, 별지 제24호의2서식이나 별지 제32호서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채무자 전원에게 등본이 교부된 것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함께 출석하거나 주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을 겸하는 경우 “등본을 교부받은 사람”으로

채무자만 기재한다면 추후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등본교부가 있었는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할 것입니다.

**2** 승계집행문 발부시 절차 및 필요 서류 여부 관련

□ 질의내용

1. 질의의 요지 및 사안의 개요

의뢰인이 어음 공증된 공정증서를 가지고 와서 자신이 위 어음채권의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며, 채권자와의 양도계약서 및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서를 가지고 와서 승계집행문을 발부하여 달라고 함에 따라, 이러한 서류만 징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2. 질의의 구체적인 내용

(1) 어음공정증서(수취인 : A, 발행인 : B, 양수인 : C)에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가지고 와서 승계집행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승계집행문의 부여가 가능한지? (질의 요지는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기록상 명백하지 않아서, 승계집행문의 부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의 가부 여부 및 불가능한 경우에 양도되는 채권을 어떻게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2) (부가하여) 승계집행문의 발부시 검토하여야 할 절차 및 필요 서류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면 가능한지 아니면 채권양도통지서의 수령증이 필요한지 여부 : 현실적으로 채권양도통지서수령증을 받기는 어렵다고 함)
- (3) 약속어음이 공증만 되고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인의 신청에 의한 승계집행문의 발부가 가능한지 여부
- (4) 이와 같은 서류에 의하여 발부한 경우에 공증사무소의 법적 책임이 없는지 여부(어느 정도까지 서류를 받아야 하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등)

□ 회신내용

○ 질의 (1) 및 (2) 승계집행문의 발부시 검토하여야 할 절차 및 필요 서류

채권자의 승계인이 승계집행문부여를 신청한 경우, 그는 자신이 채

권을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증인법 제46조제3항 참조).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는 승계의 원인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승계의 원인이 상속일 때에는 상속인인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로는 가족관계증명서, 합병인 때에는 합병등기가 나타난 법인등기부등본이 이에 해당합니다.

승계의 원인이 계약인 경우라면 승계사실을 증명할 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채권양수도계약서
- ②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단, 채권양수도계약서가 인 증된 것이면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고, 양수인이 직접 온 경우는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는 없어도 됨
- ③ 양도인명의의 제3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서 또는 제3채무자 명의의 양도에 관한 승낙서.
- ④ 위 ③항의 양도 통지서는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제3채무자명의의 승낙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거나 인증받은 것이어야 함.

양도통지서가 도달된 사실의 증명

은 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경우, 우체국에서 발급해주는 배달증명서(발송시 배달증명과 발송후 배달증명이 있음)에 의합니다. 배달증명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양수인은 양도인을 통하여 미리 배달증명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양도통지서를 보낼 때 애초부터 내용증명 및 (발송시)배달증명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질의 사안의 경우처럼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채권의 양도는 어음법에 따라 배서(단, 배서공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방식에 의하여 양도할 수도 있고, 민법에 따라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다고 하여도 어음(유가증권)은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민법 제519조), 약속어음 채권과 원인 채권은 전혀 별개의 채권이므로 양도대상 채권으로 약속어음 채권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질의 사안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양도 대상 채권으로는 원인채권만 언급되어 있고 약속어음채권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바, 그 자료만으로 본다

면 약속어음 채권의 양도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3) 약속어음이 공증만 되고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인의 신청에 의한 승계집행문의 발부가 가능한지 여부

승계사실이 증명되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 질의 (4) 이와 같은 서류에 의하여 발부한 경우에 공증사무소의 법적 책임이 없는지 여부(어느 정도까지 서류를 받아야 하고,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등)

공증인이 제출받는 서류는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것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1), (2)항에 대한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3** 소위 ‘원본대조필’ 취지의 사서증서의 인증가능 여부 관련

□ 질의내용

1. 질의의 요지 및 사안의 개요

의뢰인이 영문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 문서가 원본이라고 하면서 “원본대조

필” 내지 “사본이 원본과 동일” 하다는 취지의 국문으로 된 사서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사서인증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근거법규정 및 서식례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2. 질의의 구체적인 내용

- (1) “원본대조필” 내지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 이라는 사서증서 인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능 시 그 근거 법규정
- (2)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를 유추적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등본”을 “사본”으로 수정하여 사용가능한지 여부
- (3) 아니면 동 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별지 제44호 서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4) 의뢰인이 가지고 온 서류가 원본으로 보이지만, 정확히 원본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원본대조필” 공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본의 진정성 여부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5) 추후 원본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원본대조필” 사서 인증을 한 공증사무소의 법적 책임 유무에 대하여

□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한 답변

불가합니다.

공증인법 및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원본대조필” 내지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이라고 적어서 하는 사서증서 인 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본이 원본과 대조하여 그와 일치한 경우 공증인이 할 수 있는 인 증은 공증인법 제57조 제2항 및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제33호서식과 제36호서식을 사용하여 하는 사서증서 등본의 인 증입니다.

촉탁인이 영문을 병기하여 등본인 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41호서 식 및 제44호서식에 의하여야 합 니다.

○ 질의 (2)에 대한 답변

불가합니다.

○ 질의 (3)에 대한 답변

질의 (1)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질의 (4)에 대한 답변

원본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 으면 촉탁을 거절하여야 할 것입 니다.

○ 질의 (5)에 대한 답변

“원본대조필”이라고 적어서 하는 사서인증이라는 제도는 없지만 질 의 취지가 사서증서 등본의 인 증을 하였는데 후일 그것이 원본이 아닌 것으로 판명난 경우 공증인사무소 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 묻는 것으 로 이해하여 답변합니다.

사서증서 등본의 인 증은 사본을 원 본과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이 인정 될 때 하여 주는 인 증이므로 그것 이 원본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 다. 따라서 등본인 증제도가 원본의 진정성립을 인 증하는 것은 아니지 만, 원본의 진정성립에 의문이 있 으면 공증인은 그 사서증서의 사본 에 대하여 등본인 증을 하여서는 아 니됩니다.

만일 원본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 이 명백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본인 증을 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서는 공증인에게도 법적 책임 이 뒤따를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 주요 회무

### 1 집행증서 범위 확대 주요 골자 공증인법 개정 및 공포

- 협회와 법무부에서는 지난 2년간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집행증서의 대상을 건물·토지·특정 동산의 인도에까지 확대하고, 거짓 선서에 대한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공증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마침내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2013. 5. 28.(화)자로 공포되고, 2013. 11. 29.(금)부터 시행에 들어감.
- 개정법에서는, 건물·토지·특정 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되,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차건물 반환에 관한 집행증서는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따라 건물을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임대인이 상환할 보증금 반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에 관한 집행증서의 집행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여하도록 함.
- 또한 선서인증의 경우, 선서자가 증서와 선서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선서할 수 있도록 선서방법을 촉탁인의 자필 선서서로 선서하도록 하는 등 선서인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거짓 선서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 선서를 한 후에도 법정에서 오류를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여 관련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함.

- 구체적인 개정법률 내용은 법령자료 및 유권해석 - 새 법령 참조

### 2 2013. 10. 시행 공증사무지침 중 집행증서 작성 및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 관련

- 법무부는 2013. 10. 1.부터 대부업자·저축은행 등이 일반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강제집행을 위한 공증을 하는 경우, 대출계약자 쌍방이 모두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도록 하고, 대부업자 등의 직원이나 대출브로커가 채무자를 대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공증인이 외국어로 기재된 문서와 그 번역문이 일치한다는 번역공증을 하는 경우, 번역능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람만 번역공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번역인이 직접 공증인 앞에서 서약하도록

하는 집행증서 작성 사무지침 및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을 시행.

- 동 지침을 통하여, 그동안 대부업자 등의 직원이나 대출브로커가 채무자까지 대리하여 동일 공증인에게 수십~수백 건의 집행증서 작성을 동시에 신청하면 공증인은 정해진 시간 내에 공증을 완료하기 위해 채무자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비대면 공증, 수수료 할인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는 한편, 그 동안 번역능력이 없거나 번역을 하지도 않은 여행사, 유학원의 직원, 심지어 택배기사 등이 번역인 행세를 하면서 번역문 인증을 신청해도 공증을 해주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법무부에서는 전망.
- 이와 관련하여, 일부 회원의 경우 집행증서 작성사무지침은 민법의 쌍방대리 허용규정에 어긋날 뿐 만 아니라 공증인법이 정하는 촉탁인 확인 및 대리권 증명 방법을 무력화하여 공증인의 ‘촉탁인 확인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채무자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채무자의 권리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훨씬 크며, 회원 사무소 입장에서 동 지침의 영향으로 집행증서 작성 촉탁과 번역문 인증 촉탁이 사실상 거의 없어지고 있어,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공증사무소 유지 자체를 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진정을 일부 제기

- 이에 협회에서는 기존 공증 실무 큰 틀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침 시행 후 향후 6개월은 동 지침의 정착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과도기로 판단, 회원들에게 오는 3월까지 공증사무 지침에 대한 제반 문제점 등 사례를 협회에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상태.
- 동 지침 제정취지를 볼 때, 공증인이 대부업자 등의 금전대부계약에 따른 집행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부업자 등이 쌍방대리로 촉탁해 오는 경우 이를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무분별한 집단공증을 방지하고 집행수탁의사를 포함한 채무자의 의사표시 확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 협회에서는 최근 법무부장관 예방 자리를 마련, 현 지침의 제정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기존 집행증서 작성 형태와 현 지침을 조화시키고 합리화한 개정안으로

- ① 대부업자의 범위에서 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 등 일부는 쌍방대리 촉탁을 허용하거나 또는
- ② 촉탁대리인을 변호사로 할 경우에는 쌍방대리 촉탁을 허용하자는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는바,



이를 논의하기 위한 법무부와 협회, 법원, 민사법학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T/F 구성을 법무부장관께 협조 요청함.

**3** 국세청의 특정 연도 공증인별 건수 등 자료 제출 요청 관련 협회 의견 제시

-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 84조에 따라 공증인수수료에 대한 세원관리 목적으로 법무부가 요청 받은 특정 연도 각 공증인별 건수·가액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함.

- 다 음 -

1. □□지방국세청의 공증인별 건수·가액 자료(2010년 분부터 2012년 분까지) 제공 요청에 대하여 대한공증인협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지방국세청장의 자료 요청은 특정 공증인에 대한 조세부과와 관련하여 동 공증인의 건수·가액 자료에 대한 협조 요청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공증인에 대한 자료 요청이기 때문에, 「과세 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과세 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세자료는 크게 특별 과세자료와 일반 과세자료로 나눌 수 있고, 일반 과세자료는 다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상 특별히 별도로 취급하므로 특별 과세자료에 해당하고(동 법률 제7조), 그 밖의 과세자료는 일반 과세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 과세자료에는 세무관서의 장으로부터 따로 요청이 없어도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매년 직접 세무관서에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령에서 미리 정하고 있는 과세자료(동 법률 제5조, 시행령 제3조)와 법령에서 미리 자료 제출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세무관서의 장으로부터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자료(동 법률 제8조)가 있습니다.

공증업무처리현황 자료는 일반 과세자료 중 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특별히 법률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에 관

한 자료만을 과세자료의 범위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업무처리현황은 법률에 따라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보고받는 자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자료 제출 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과세자료의 범위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동시행령 제3조 별표 참조). 따라서 공중업무처리현황 자료는 어느 모로 보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과세자료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공중업무처리현황 자료가 일반 과세자료 중 후자 즉,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에 관한 자료라고 하여 무조건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도 의문입니다. 공증인으로 하여금 매달 공중업무처리현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한 취지는 공증인으로부터 정확한 공증실적에 관한 자료를 보고받아 거래의 실상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파악

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위 보고 내용을 일괄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것은 본래의 정부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3. 부득이 공증인별 건수·가액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할 때라도,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인들이 조세행정상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법무부의 세심한 배려를 바라는 바입니다.

원래 공중업무처리현황은 이른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바(「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동 서식에 의하면 공정증서의 작성, 정관인증, 의사록인증, 사서증서인증, 확정일자, 기타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 공정증서와 정관인증의 경우에 한하여 가액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공정증서의 경우에도 가액이 없는 공정증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수수료 금액도 최저수수료 1만1천 원부터 최고 3백만 원까지로 그 차이가 매우 커서 공증수입이 공중업무처리

건수에 결코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가 가액과 연동되는 경우 상한액을 두고 있어서 가액이 반드시 공증수입과 비례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가액을 기초로 하여 공증수입을 어렵히는 것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인증의 경우, 수수료가 정액인 경우부터 가액과 연동된 경우까지 수수료를 정하는 방법이 다양하므로, 더구나 정관인증에 대하여만 가액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증건수나 가액만으로 도무지 공증수입을 어렵힐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많은 건수나 고액이라는 이유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삼거나 불성실한 세무신고로 추단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공증업무처리현황 자료는 이와 같이 과세자료로서 갖는 의미가 제한적이므로 이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매우 보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세와 관련하여 공증이 갖는 특성에 대하여도 세무관서에 설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공증은 다른 전문직의 사무와 달리 건수가 갑자기 많아지거나 또는 갑자기 적어지는 경우도 흔히 있으므로 사건처리 건수나 수입신고 금액의 갑작스

런 큰 변화가 불성실한 세무신고를 의미하지 않다는 점이나 합동사무소의 경우 통일된 운영 지침의 미비로 2011년 이전에는 합동사무소별로 공증업무처리현황이 보고되었지만 전자공증시스템상에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2012년 이후에는 공증인별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 등이 그렇습니다.

요컨대 법무부가 공증인별 건수·가액 자료를 제공할지라도 그 자료만을 단순히 취합하여 제공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부연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4. 아무쪼록 저희 협회는 공증인별 건수·가액 자료를 세무관서에 제공할지라도, 그것이 과세자료로 활용됨에 있어서 성실하게 공증수입을 신고한 공증인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법무부의 배려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4 공증인 수수료 할인 행위 근절을 통한 공증사무 신뢰 회복 협조 안내

- 법무부 공증사무 감사에서, 일부 회원 사무소가 촉탁인들로부터 공

증 사건의 대량 촉탁을 조건으로 수수료 할인을 요구받고, 실제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해 준 이유로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한 사안과 관련,

- 협회에서는 공증 업무를 대리하여 촉탁하는 법무사, 변호사, 여행사,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의 소속 협회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증업무 대량 유치를 조건으로 수수료에 대한 할인을 요구하거나 감액해 주는 것은 공증인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편의제공이라는 미명하에 공증인이 촉탁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증서를 작성하는 비대면 공증 등 중대한 법령위반으로까지 이어져 실제 촉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협회나 단체에 소속된 개별 회원에게도 이를 공지하여 공증 업무의 대량 촉탁 등을 조건으로 공증인 수수료 할인을 요구하거나 임의 감액을 받지 않도록 협조 요청함.
- 특히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별도로 서울 지역 회원 사무소 중 각 공증업무별 처리건수 상위 10개소 회원 대표 변호사님들 및 법무부 실무진과 함께 오찬간담회를 진행, 촉탁 유치를 위한 공증인 수수료 할인은 공증인법 제7조(수수료, 일

당, 여비 등) 및 공증인수수료규칙 제30조(수수료 등의 감액 불가)에 반하는 위법 행위로서 회원 사무소 간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자칫 비대면 공증으로까지 이어져 공증 불신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회원 스스로 자정을 결의하는 한편 공증인 수수료 할인 근절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음.

#### 5 인가공증인의 구성원 변호사 지정 신고 절차 제도개선 요청

- 현행 변호사법 및 공증인법상 인가공증인의 구성원 변호사의 인가 및 인가 후 공증담당 변호사 지정 신고 절차와 관련하여, 행정절차상 이력서 등 유사 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그 처리 절차에 2중으로 시간이 낭비되고 있고, 신체검사의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과도한 신체검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규제사항이라는 일부 지적과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

- 다 음 -

- 인가공증인의 구성원 변호사 인가 절차는 변호사법상의 규제사항으로, 공증인법상의 공증담당

변호사 지정 신고절차를 하나로 통합하기에는 경유 기관 및 제출 서류 등의 차이로 어려우나, 구성원 변호사 인가 후 진행되는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절차는 인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므로,

- ① 구성원 변호사 인가절차와 중복되는 서류는 최대한 제외하여 간소화시키고,
- ② 신체검사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신고일 기준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표로 대체하는 등 간이한 방식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출로 완화하며,
- ③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신고 수리 통지 후 소속 지방검찰청에 신고하는 지정인의 영문 또는 한글 서명 및 신원보증금은 절차를 통합하여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신고당시에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하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 유사 “공증” 광고 노출 근절 협조 요청

- 네이버 등 국내 유수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업체의 최근 공증과 관련된 무분별한 키워드 광고와 관련하여,
- 협회는 공증인법 제87조 “공증인이 아니면서 공증인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의거,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 공증인이 아닌 번역가 등이 ‘공증’, ‘공증번역’, ‘번역공증’, ‘공증대행’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공증인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인바,
- 네이버, 다음, 네이버, 구글 등 인터넷 포털 업체가 그러한 위법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공증인법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차후 공증인이 아니면서 ‘공증’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위법한 광고행위가 계속될 경우 협회로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안내하고, 인터넷 포털업체들로 하여금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청함.

## 7 제7회 공증주간 설정 및 공증인 보조자 교육 시행

- 협회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공증제도가 사인간 거래시 증거 남기는 문화를 확산시켜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예방을 통하여 약속이 지켜지는 신뢰사회를 조성하고, 법질서 바로 세우기의 중요한 수단임을 적극 알리기 위하여 2013. 9. 23.(월)~27.(금)까지를 “제7회 공증주간”으로 선정, 대국민 홍보를 시행.
- 이번 공증주간은, 제3회 때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대내외 행사 격년제 간소화 방침에 따라 선포식이나 홍보대사 위촉 등 일체의 부대 행사를 포함하여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배포 등은 배제하고, 공증주간 기간만을 설정함.
- 다만, 제7회 공증주간을 기념하고 공증인법 제77조의8(회원 연수 등) 규정에 따라 공증인 보조자의 직무수행 능력 제고와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2013년도 공증인 보조자 교육”을 2013. 9. 25.(수) 14:00~18:00까지 시행, ① 최근 공증사무지침 해설, ② 질의회신에 대한 설명, ③ 전자공증시스템 사용방법, ④ 공증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하였고, 동 교육에는 전국 총 291개 회원 사무소 공증인 보조자 296명(각 사무소별 1

명. 단, 5개소는 2명 연수)이 참석하였음.

## 8 상법상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의결 같음시에도 등기시 별도 인증 의사록 첨부 요청 검토

- 상법 제363조 제5항에 따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무부가 상법 제373조에 따라 소규모회사가 서면 결의를 했다 할지라도,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서면 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상업등기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 등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사록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하도록 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바, 이와 관련하여 협회 차원에서 서면 결의에 의한 주주총회 의결 같음의 경우라도 등기시에는 종전과 같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내부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법원

행정처에 정식 공문으로 협조 요청 예정.

**9 국제공증인협회 활동**

1. 2013년도 아시아지역위원회 몽골 정기회의 참석

- 2013. 7.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공증인협회 주최로 개최된 제3차 정기회의에 한국이 위원장 국가 자격으로 참석하고 회원국인 일본, 중국, 몽골을 포함, 옵서버로 베트남 등 총 5개국이 모여 각 국가별 공증제도 운영현황을 서로 교환하고, 공증지역 확대 및 접근성 제고 등에 관한 토론을 진행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상속재산의 양도와 양도과정에서 공증인의 역할 증대 가능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는바, 상속재산의 양도 문제는 모든 나라에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그 양도과정에서 가족 간 분쟁도 종종 일어나는 중요한 사안으로 상속재산이 여러 나라에 걸쳐 존재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할 때, 상속에 관한 각 국 공증인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며, 상속에 따른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증인의 업무영역을 확충하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각 국의 의견교환을 갖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되었음.

- 회원국 간 협의에 따라 각 회원국 순번제 위원장 직 수행 및 회의 개최국 순환방침에 따라 2014년도 위원장 국가는 몽골 측이 수행하며, 2014년도 정기회의는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
2. 2013년도 국제공증인협회 정기총회 및 제27차 국제공증인대회 등 참석
-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UINL 2013년도 정기총회·이사회·각종 위원회 겸 제27차 국제공증인대회에 협회장 및 총무이사가 참석, 2010년도 모로코 총회에서 UINL의 우리 협회 연회비로 책정된 바 있는 14,071.4 EURO를 1/2 금액인 7,035.70 EURO로 인하하여 최종 확정시키고, 또한 협회장이 UINL 아시아지역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2013. 7. 17.(수)~18.(목)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2013년도 CAAs 회의 결과 등을 설명했으며, 이사회 정회원으로서는 각종 UINL 현안 의결에 참여하고, 국제공증인대회에 참석한 각 회원 및 비회원 국가의 협회와 공증인 간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였음.